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의3서식] <개정 2022. 8. 4.>

제 호

건설기계 [ ] 정기검사 [ ] 수시검사 명령서

소유자	성명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	(전화번호:)		
건설기계명			등록번호	
차대번호			규격	
명령사항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아래 수시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신청할 것.			
수시검사 항목 (수시검사만 작성)				

1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[ ]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
[ ]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
[ ] 정기검사
[ ] 수시검사
를 명령하니 기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2.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습니다.

3. 부득이하게 명령을 지정기간 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1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지정된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이 시·도지사 직권으로 말소됩니다.

4. 명령이행기간 내에 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명령 미이행으로 처리됩니다.

년 월 일

시 · 도 지 사 직인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